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시보임용 소방공무원의 정식 임용,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, 절차 등에 관하여 소방청장이 정한 별도의 「소방공무원 징계등 기록말소 지침」을 폐지하고,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「국가공무원 복무·징계 관련 예규」를 따르도록 함으로
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징계 제도의 통일성 확보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행정안전부령 제 호

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정규임용심사위원회) 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소방공무원이 되고,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회가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, 교육훈련성적, 근무태도, 공직관,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

⑤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 별지 제14호 서식의 “정규임용(면직) 심사위원회 의결서”를 작성하여야 하며,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보임용 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하

여야 한다.

제14조의2제4항 중 “소방청장이 정한다”를 “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”로 한다.

별지 제1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4호 서식]

정규임용(면직) 심사위원회 의결서

(제2조의2 제5항 관련)

☐ 안 건 :

☐ 의결주문

시보임용소방공무원 ○○○의 ○명에 대한 정규소방공무원으로의 임용(제청)/면직(제청) 심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.

소 속	직 급	성 명	생년월일	심사 결과

☐ 의결이유(면직 또는 면직제청 의결 시)

대상자	소 속	직 급	성 명	생년월일
이 유				

년 월 일

(기 관 명) 정규임용(면직) 심사위원회

청인

유의사항

- 의결주문 심사결과에 임용(제청) 의결시 “임용”, 면직(제청) 의결시 “면직”으로 기재
- 의결이유 이유란에는 면직(제청) 의결 대상자와 관련하여 법령상 면직(제청) 사유, 관련 사실관계, 기타 면직(제청) 의결 시 판단의 근거가 된 사항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기술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<신 설>		제2조의2(정규임용심사위원회) ①		
		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정규임용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8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.		
		② 위원장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 소속 소방공무원이 되고, 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의 소방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지명한다.		
		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		
		④ 위원회가 시보임용소방공무원을 정규소방공무원으로 임용 또는 임용 제청하기 위한 심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, 교육훈련성적, 근무태도, 공직관, 기타 공무원으로서의 자질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.		
		⑤ 위원회는 회의 결과에 따라		

제14조의2(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) ① ~ ③ (생략)		별지 제14호 서식의 “정규임용(면직) 심사위원회 의결서”를 작성하여야 하며, 면직 또는 면직제청을 결정한 경우에는 의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보임용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④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의 말소방법,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.		제14조의2(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		④-----
		-----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.